

광주광역시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지난 '94년에 제정된 “광주광역시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가 그 동안 운영실적이 전무하여 실효성이 없게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에 통합 운영하여 내실을 기하고
- 자문위원회에 특정한 자문과제를 부여한 경우 그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경비지급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 국제교류협력 등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자문위원회 기능 신설(제3조)
구의 국제화 추진 및 교류 등에 관한 사항
- 수당 등(제10조)
특정한 자문과제 부여시 반대급부적인 경비지급 규정 신설
- 부칙(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광주광역시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과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

3. 검토의견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94년에 제정된 “광주광역시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가 그 동안 운영실적이 전무하여 실효성이 없게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에 통합 운영하여 내실을 기하고, 자문위원회에 특정한 자문과제를 부여한 경우 그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경비지급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국제교류협력 등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첫째, 자문위원회 기능 신설과 광주광역시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의 폐지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방화·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 국제화 추진 과제 발굴, 국제교류협력사업의 선정 및 추진 지원 등 국제교류협력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과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나, 협의회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최근 3년 동안의 운영실적이 전무하다는 데에서도 잘 밝히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설치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데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각종위원회가

운데 형식적인 운영으로 실효성이 없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 기능이 유사·중복된 위원회는 과감히 통·폐합하는 등 적극적인 정비가 요구되는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개정안처럼 국제화 추진협의회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이 기능을 지역발전자문위원회로 이관하여 운영토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특정한 자문과제 부여시 반대급부적인 경비지급 규정 신설에 대한 의견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제10조 제2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에 특정한 자문과제를 부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란 자치단체의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 등을 통하여 시민의사 참여 통로로서의 기능과 전문성을 제공하여 행정의 타당성, 능률성,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원회에 특정한 자문과제를 부여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이러한 경우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어떠한 경우에 자문과제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성을 결하고 있고, 부여된 자문과제에 대한 위원회의 직무(예 : 결과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언급도 없이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 위원회에 자문과제를 부여할 수 있는 경우도 지역발전자문위원회에만 한정하여 논할 것이 아니라 서구청 산하에 있는 각종위원회와 관련하여 논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의원님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가칭 ‘각종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서 이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였으면 합니다.